

[별표 13]<신설 1985.7.3, 1992.10.2, 1996.12.28>

I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하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- 다. 작업장의 상속이나 양도·양수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이나 양도·양수전에 당해작업장에 행하여진 처분(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,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)의 효과는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.
- 라.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.

II. 개별기준

행정처분기준(제38조관련)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위반회수별 행정처분기준		
		1 회	2 회	3 회
1.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을 한 때	법 제4조제1항	영업정지15일	영업정지30일	허가취소
2.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	법 제4조제1항 및 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15일	영업정지30일
3. 작업장의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	법 제4조제2항	경 고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15일
4. 작업장 설치허가 또는 품목허가시 붙인 조건에 위반한 ??	법 제4조제3항	영업정지15일	영업정지30일	허가취소
5.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장을 사용한 때	법 제5조제2항	영업정지30일	허가취소	
6. 작업장 또는 용기등의 제조업을 상속받거나 양도·양수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때	법 제6조제1항 및 법시행규칙 제37조제4항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15일	영업정지30일
7. 작업장 또는 용기등의 제조업을 휴기하거나 휴지한 영업을 재개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때	법 제6조제2항 및 법시행규칙 제37조제4항	경 고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15일
8. 작업장 또는 용기등의 제조업을 폐지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때	법 제6조제2항 및 법시행규칙 제37조제4항	허가취소		
9. 수축의 도살·해체 및 집유의 방법에 위반하여 작업	법 제7조	경 고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15일

을 한 때				
10.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	법 제8조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15일	영업정지30일
11. 정당한 이유없이 도살·해체 또는 집유의 청구를 거부한 ??	법 제9조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15일	영업정지30일
12. 도살·해체하는 수축과 착유하는 유우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	법 제10조			
가. 도계장을 제외한 도축장	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15일	영업정지30일
나. 도계장·집유장		경 고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15일
13. 이득을 목적으로 수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때	법 제11조	영업정지15일	영업정지30일	허가취소
14.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때	법 제12조제2항			
가. 도계장을 제외한 도축장	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15일	영업정지30일
나. 도계장·집유장		경 고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15일
14의2. 자체검사원이 별표 14의 기준에 미달한 때	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2항	경 고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15일
15. 정하여진 용기등의 규격과 제조시설의 기준에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한 때	법 제14조의2 제1항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15일	영업정지30일
16. 작업장에서 정하여진 규격품외의 용기등을 제조한 때	법 제14조의2 제3항	경 고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15일
17. 농수산부 장관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축산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행하는 수급조절 조치명령에 위반한 때	법 제15조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15일	영업정지30일
18. 검사원이 작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기타 서류 및 작업상황을 검사하는 것	법 제16조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15일	영업정지30일

을 거부·방해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				
19. 작업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작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	법 제18조제1항제1호	허가취소		
20. 작업장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	법 제18조제1항제2호	영업정지30일	허가취소	
21. 2년간 계속하여 작업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	법 제18조제1항제6호	허가취소		
22. 작업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한 때	법시행규칙 제41조	경 고	영업정지 5일	영업정지10일
23. 도살이 금지된 수축을 도살한 때	법시행규칙 제33조	영업정지 7일		
24. 집유가 금지된 유우 또는 양으로부터 집유한 때	법시행규칙 제34조	경 고	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 5일	영업정지30일 영업정지10일